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51
----------	------

2022년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임종국 의원 외 23명
- 나. 제출일 : 2022년 1월 21일
- 다. 회부일 : 2022년 1월 25일
- 라. 상정일 :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2월 1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종국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디지털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디지털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22. 1. 27. ~ 2. 8.)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¹⁾ 제1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관련 법령(「지방출자출연법」) 시행일이 2020년 6월 9일이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의 기본적인 조례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2020년 12월 31일 시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7호, 일부개정시행 2020.12.31.)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1) 법률 제16665호, 일부개정 2019.12.3., 시행 2020.6.4.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개정사항을 1년 7개월 동안 개정하지 않아 동 조례가 상위법령과 다른 내용을 규정(법은 “3개월 이내”, 조례는 “2개월 이내”)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례의 법적 정합성 및 법체계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17조제2항은 결산서류 제출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였던 것을 “2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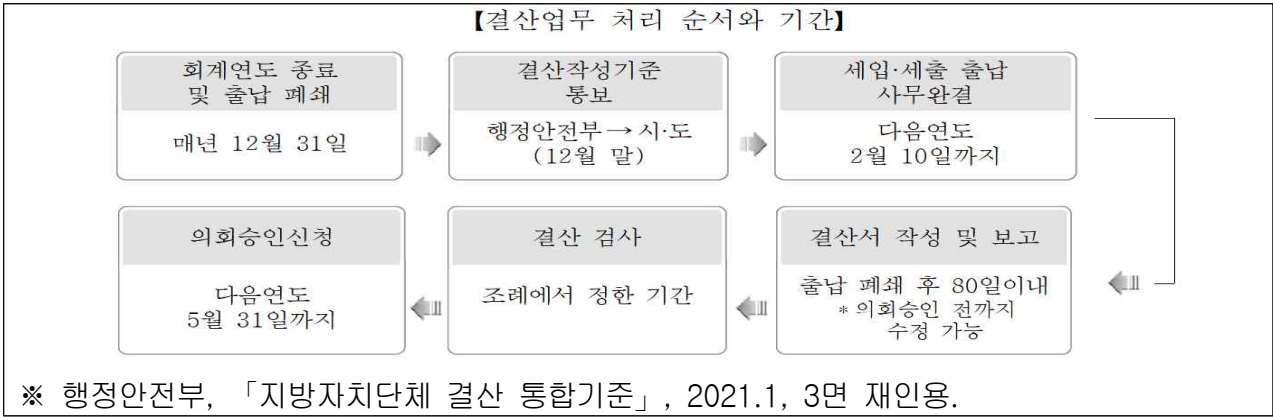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① (생략)	① (생략)	① (생략)	① (생략)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u>3개월 이내</u>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u>2개월 이내</u>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u>2개월 이내</u>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u>2개월 이내</u>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u>2개월 이내</u>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생략)	1. ~ 2. (생략)	1. ~ 2. (생략)	1. ~ 2. (생략)

- 또한,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 출납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의 결산서 작성 기한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의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서울시의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이미 기존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 완료시점인 2022년 2월 이후 공포·시행이 예정되는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의 소급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조례도 원칙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지지만,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디지털재단의 결산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로 소급적용이 가능한바,²⁾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시행일에 대한 부칙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한다. …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8630 판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51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임종국, 권영희, 김기대,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이광호, 이병도,
이영실, 이정인, 장상기,
최 선, 홍성룡, 황규복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디지털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디지털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p> <p>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p>	<p>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p> <p>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p>